##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4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민형배·신영대·서미화

이수진 • 노종면 • 이정문

복기왕 • 어기구 • 김문수

이훈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국가 보상 의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및 감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 피해는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오물풍선 때문에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인명 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근본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 대북 정책 때문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피해 최소화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1호나 목).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추락·충돌"을 "추락·충돌, 「통합방위법」에 따른 침투·도발이나 위협"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 1.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 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가. (생략) 나.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 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 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 축전염병예방법 |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 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한	특별	별법」	에	따른	ㅁ	세
먼지	],	「우	-주7	개발	진	훙
법」	에	따른	. 인	공우주	스물	·체
의	<u>추</u> 린	ㅏ - 충	돌	등으	로	인
항	피해					

<u>추락・충돌, 「통합방</u>
위법」에 따른 침투・도발
이나 위협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